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508 판결 [채무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3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21. 3.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산시 단원구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2020. 7. 17.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4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9. 4. 15.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 원고 B로부터 3억 원을 각 변제기 2019. 10.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E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3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E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회생절차에서 E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피고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3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3.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최석진, 판사 조아람